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서미화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450

발의연월일: 2025. 3. 28.

발 의 자:서미화・김 윤・조계원

이수진 • 윤종군 • 김예지

허성무 · 전종덕 · 박정현

박해철 • 박용갑 • 양문석

박지원 · 정진욱 · 최민희

장종태 • 용혜인 • 고민정

의원(18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임시 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등으로 하여금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터(이하 "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피해장애인은 자신이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어 더 이상의 학대행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고 향후 사회복귀 가 가능함. 따라서 피해장애인이 가해자로부터 분리되어 머물고 있는 쉼터에 관한 정보는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관리되어야 함.

만약, 쉼터의 명칭, 주소, 연락처 등 주요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피해장애인의 신변이 가해자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으며, 피해장애

인의 신변 안전과 심리적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.

이에 쉼터의 명칭, 주소, 연락처 등 쉼터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,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(안 제59조의13제3항 및 제90조제3항제3호의7 신설).

법률 제 호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9조의13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해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쉼터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장애아동 쉼터임을 알아볼 수 있는 명칭, 주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제90조제3항에 제3호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의7. 제59조의13제3항을 위반하여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애아동 쉼 터임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한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59조의13(피해장애인 쉼터 등)	제59조의13(피해장애인 쉼터 등)		
①・② (생 략)	①·②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③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해		
	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장애인		
	쉼터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장		
	애아동 쉼터임을 알아볼 수 있		
	는 명칭, 주소 등 보건복지부령		
	으로 정하는 정보는 공개하거		
	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		
<u>③</u> (생 략)	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		
제90조(과태료) ①·② (생 략)	제90조(과태료) ①·② (현행과		
	같음)		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3		
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			
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			
1. ~ 3의6. (생 략)	1. ~ 3의6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3의7. 제59조의13제3항을 위반		
	하여 장애인 쉼터 및 피해장		
	애아동 쉼터임을 알아볼 수		
	있는 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		
	한 경우		
4. ~ 7. (생 략)	4. ~ 7. (현행과 같음)		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		